
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27.

발의자 : 김선동 · 김규환 · 박명재
원유철 · 정갑윤 · 나경원
강석진 · 경대수 · 신보라
정운천 · 이철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수수료는 법률에서 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.

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협약신청,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).
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수수료)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, 신고 및 증명서 등의
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
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·면
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21조의2(수수료)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,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·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</p>